문서번호	어르신복지과-8034
결재일자	2016.2.2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지원담당	어르신복지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	
백지훈	김기란	이만형	02/26 박형중		
협 조					

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운영 계획

2016. 2.

교육문화복지국

어르신복지과

2016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계획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동휠체어· 전동휠체어·전동스쿠터의 소모품 교체 및 고장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이동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Ⅰ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66조(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 등)

>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·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

Ⅱ 운영내용

- 운영주체 :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성북장애인보장구클린센터
  - 위치 : 성북구 삼선교로23가길 7
  - 인력 : 2명 (센터 수리 1명, 출장 수리 1명)
- 협약기간 : 2016. 1. 1. ~ 2016. 12. 31.
- 지원대상 :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을 사용하는 성북구 거주 등록장애인
- 서비스내용 : 고장수리, 소모품 교체, 안전장치 부착, 보조기구 세척 및 대여
- 출장수리 병행 추진 (2016년 신규 사업)
  - 개별 출장수리 및 동복지마을센터 순회 출장 수리 실시

수리비 지원기준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무상수리
- 일반장애인 : 연간 15만원 한도에서 수리비의 50% 지원
- 수리비용 : 소요되는 부품비와 동일하게 책정함

Ⅲ 운영실적

이용현황

연도	수급·차상위 장애인 수리지원	일반장애인 수리지원	대여	계
2015년	457	239	282	978
2014년	442	256	248	946
2013년	501	214	349	1,064

수리실적

연도	수리	충전	세척	대여	계
2015년	620	30	46	282	978
2014년	604	66	28	248	946
2013년	607	62	46	349	1,064

Ⅳ 예산

총 지원예산 : 85,000천원(구비100%)

○ 보장구클린센터 사업비 : 67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내 역	산출근거	합 계
인건비	2,000×1명×12개월 = 24,000	24,000
운영비	2,333×12개월 ≒ 28,000	28,000
사업비(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)	1,250×12개월 = 15,000	15,000
총 계		67,000

○ 찾아가는 출장수리 사업비 : 18,000천원 (2016년 신규사업)

(단위 : 천원)

내 역	산출근거	합 계
인건비	1,250 ×1명×12개월 = 15,000	15,000
사업비(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)	250×12개월 = 3,000	3,000
총 계		18,000

V 행정사항

지도점검

- 추진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61조
- 점검기간 : 연2회 실시
- 점검방법 : 현지 출장 점검
- 점검내용 : 보조금 집행사항 및 수행사업 관련 전반사항

사업안내 및 홍보

- 우리구 홈페이지 및 성북소리 게재
- 각 동마을복지센터에 홍보 및 사업 협조 공문 발송(붙임 2, 3)
- 유관기관 협조 공문 발송

붙임 1. 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협약서 1부.

2.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리플릿 1부.

3. 출장수리서비스 홍보지 1부. 끝.